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I.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증기간,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실시한다.
2. **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방법, 비용수납,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상호 간의 혼선을 방지하며 원활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3. 이용계약 전 보호자 및 이용 어르신과 협의를 통해 급여계획, 시간, 급여내용 등을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4. 월 이용료는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한 해당 서비스 금액을 적용하며, 해당 어르신의 본인부담 비율을 적용하며, 월한도액이 초과될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알려드리고 계약을 실시한다.
※ 이용료는 별첨 서류 참조
5.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한 금액 외 식비 및 간식비 등의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임을 공지하며, 비급여 항목은 추후 변동가능함을 안내하고 계약을 실시한다.
6.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전 해당 시,군,구청에 "입소 이용신청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제출, 회신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이용 계약기간**은 최초 서비스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사망, 전원, 갱신종료, 계약종료 의사표현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자동 연장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II.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이용료 등 급여비용 중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금액 변경시 보호자, 신원인수인에게 공지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급여항목 외 비급여항목 급여변경 시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간담회를 통하여 변경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변경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한다.
3. 이용료는 월한도액 내에서는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 비율에 적용을 하며, 월한도액이 초과될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알려준다.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경감대상자인 경우 사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입소이용의뢰서를 제출 및 회신을 받은 뒤 발급번호, 발급일시 등을 기입한 후 뒤 이용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5. 장기요양등급대상자가 아닌 일반 대상자 및 재가급여 대상자의 경우 입소비 및 관련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보호자 및 이용대상자에게 공지하며, 그 비용은 별도 공지한다.

Ⅲ.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 1명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주 보호자를 선정하며 상황에 따라 주 보호자가 아닌 사람을 신원인수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가정내 보호 및 서비스 계약, 서비스 비용 납부, 긴급 연락 등의 책임을 지는 자를 신원인수인이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부모, 자녀, 친족 등 수급자의 주 보호자를 신원인수인으로 한다. 만일 존속 및 비존속 관계의 신원인수인이 없을 경우, 서비스 당사자, 동주민센터 직원 등을 신원인수인으로 정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사정으로 인해 신원인수인을 변경시 사전에 센터에 신원인수인 변경 사유 및 변경 신원인수인의 개인정보(이름, 관계, 연락처, 주소 등)을 통지하여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건강관리와 간호관리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갑"이 "을"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져야한다.

(2)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때,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신원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신원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화해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때, 기타 신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Ⅳ. 계약 해지

1. 계약의 해지는 사망, 전원, 인정기간 종료 및 보호자의 서비스 해지 요구 시 해당일자에 해지가 되며, 해지 요구 시 최소 1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밝혀 상호 협의 후 해지한다.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3개월간 연체 시 보호자에게 전화,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연체내역을 공지하며, 공지 후 2개월 후 지속적으로 연체 시 신원인수인에게 인계하며 자동 계약종료됨을 안내한다.

2026년 그레이스 실버케어센터 이용료 안내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이용시간 : 월 ~ 토요일 (7:30 ~ 7:30)
- 이용료 : 본인부담금 + 식비

구분	장기요양 인정자	60% 경감대상자	40% 경감대상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본인부담금	15%	9%	6%	무료
비급여 (식대 및 간식비)	1일 중식 3,500원 / 석식 3,500원 / 간식 1,500원			

- 주야간보호 1일 급여수가 : 보건복지부 산정 기준

[단위 : 원]

구분	6~8시간미만	8~10시간미만	10~13시간미만
1등급	56,060	69,730	76,820
2등급	51,930	64,590	71,160
3등급	47,940	59,640	65,750
4등급	46,300	58,010	64,090
5등급	44,650	56,360	62,460
인지지원등급	44,650	56,360	62,460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이용료 참고용 : 20일 이용 기준, 본인부담금 일반 (15%) 기준

[단위 : 원]

분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8시간	155,800	143,820	138,900	133,960
8~10시간	193,780	178,920	174,040	169,080
10시간이상	213,480	197,260	192,280	187,380